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5일, 백승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승아의원)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교원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이자,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성이 있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인 교원 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경우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교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하한)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평교사의 위원회 참여 보장이 더욱 강제력 있게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교사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원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는데,

유사한 범주의 위원 수가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내용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 위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 위원의 수에 대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의원, 김문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